

北韓의 農業協同化에 관한 研究

金	沅	根*
李	斗	淳**
高	在	模***

- I. 序 論
- II. 北韓의 土地改革과 農業集團化의 推進背景
- III. 農業協同化의 過程
- IV. 北韓의 農業管理體系
- V. 協同農場의 分配
- VI. 北韓 農業協同化의 問題點
- VII. 結 論

I. 序 論

우리 나라는 日帝 36년간의 植民地 支配로부터 해방이 되자마자 38°선을 경계로 분단되면서 北은 社會主義體制, 南은 資本主義體制라는 상반된 體制下에서 오늘에 이르렀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반도의 統一은 당위적이고 필연적인 것으로 前提할 때 北韓 社會主義體制下의 土地改革과 그 후 전개된 農業協同化 過程에 대한 올바른 認識이야말로 尙後 예측되는 南北韓 統一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특히 北韓의 土地改革은 北韓 社會主義 定着의 출발점이자 기틀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土地改革을 바탕으로 하여 6.25 이후 곧 바로 시행한 農業協同化 過程은 北韓 農業의 現實을 올바르게 判斷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지금까지의 先行研究를 보면 北韓 農業協同化 過程과 관련한 연구는 거의 찾아볼 수 없으며 일부 잡지나 신문을 통하여 개괄적으로나마 파악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이 北韓의 農業協同化 過程에 대한 研究가 미진한 것은 資料蒐集의 어려움도 있겠지만 分斷으로 인한 北韓 關係 研究가 금기시되어 온 것이 그 한 원인이 되었

* 研究委員
 ** 責任研究員
 *** 招請研究員

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실하에서 北韓 農業協同化 過程의 규명은 중요한 意味를 갖는다.

따라서 本 研究에서는 北韓이 土地改革 以後 農業協同化 事業이 실시되기까지의 背景을 살펴보고 아울러 農業協同化 事業의 實施方法과 主要 內容의 檢討는 물론 시행 상에 나타난 제반 問題點을 살펴보고 지금까지 진행해온 과정을 세밀히 分析함으로써 農業協同化 事業이 北韓 農業發展에 얼마나 기여하여 왔는가를 문헌이나 실제 체험한 분들의 경험담을 토대로 검토코자 한다.

II. 北韓의 土地改革과 農業 集團化의 推進背景

北韓의 土地改革은 南韓의 有償沒收·有償分配 방식과는 달리 無償沒收의 원칙하에 實施되었다.

이러한 原則하에 北韓의 土地分配는 전적으로 農地에 의해 構成된 農村委員會를 중심으로 하여 面人民委員會를 기반으로 實施되었는데 南韓의 農地改革이 政府에 의해 農地가 買收되어 이것을 직접 소작인에게 매도한 방식을 취한 것과는 근본적으로 그 意味가 다르다.

分配方式은 農民의 勞働能力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호당 배분면적은 가족수와 노동능력을 가진자의 수를 原則으로 하여 土地를 人口에 비례하여 평등하게 分配하는 점수제를 기준으로 하였기 때문에 정확히는 알 수 없으나 약 1.35정보이고 분배면적 중 토지

없는 농민의 농지분배면적은 전체의 61.1%이고 동시에 전체 農家의 61.1%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分配方法에 의하여 沒收된 土地는 100萬 325정보의 98.1%인 98萬 390정보가 총농가호수의 약 70%인 72萬 4,522戶에게 分配되었으며 北朝鮮 臨時人民委員會가 管理하게 된 경지면적은 충분배면적의 1.9%인 18,935정보에 불과하였다.

특히 여기서 중요한 것은 토지소유권 問題인데 北韓의 토지개혁법 제7조를 보면 토지를 농민소유로 부여하는 식은 道人民委員會가 토지소유권에 대한 證明서를 교부하여 이를 토지대장에 등록함으로써 完了되고, 제10조는 法令에 의하여 農民에게 부여된 土地는 賣買치 못하며 小作도 주지 못하고 抵當도 하지 못하도록 規定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土地의 流動性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北韓은 農民에게 토지소유권 대신 土地利用權 즉 耕作權만 인정된 것에 불과하며 결국 北韓의 토지개혁은 개인적인 소작제와 자작제를 폐지하고 국가소유제를 確立한 것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면 이러한 국가소유제를 確立함으로써 그 후 農產物 생산에 따른 대가를 어떠한 방법으로 국가에 支拂하였는지, 남한처럼 일정수준의 임차료를 지불하였는지에 대한 규명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50년대의 농업협동화로 移行해가는 과정에서 그 이전의 농업의 경영형태나 농지소유권의 변동 등 협동화로 가지 않을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 등이 밝혀져야 하기 때문이다.

원래 北韓은 토지개혁을 실시할 즈음에는 農產物 생산에 따른 세금은 국가가 일체 징수하지 않는 것으로 선전하였고 또한 농민

들도 토지개혁 자체가 농지없는 농민이나 농지가 적은 농민 그리고 雇傭人에게 無償分配해 주었기 때문에 농지 관련 세제 부담은 전혀 없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토지개혁 완료 후 「결의 제28호」를 통하여 「農業現物稅에 관한 決定」을 公布, 시행하였다.

農業現物稅의 導入에 따라 종전의 세제는 일체 폐기되고 단일 세제로서 농업 현물세가 확립되고 이에 따라 농민은 지금까지의 이른바 가혹한 잡세와 강제 공출로부터 해방되고 각종 곡물수확량의 25%만을 國家에 납입하면 나머지 농산물은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발표하였다.

여기에 토지개혁의 成果를 공고히 하고 식량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다각적인 증산정책을 실시, 독려하였다. 식량문제는 北韓의 가장 심각한 문제였는데 그 이유는 分斷으로 식량생산기지인 남한으로부터 단절되었고, 일제 때에 비해 식량이 감수한데다 소련으로의 식량이출 때문에 더욱 심각한 국면을 맞아 당시 北朝鮮臨時人民委員會의 최고 과제였던 것으로 생각할 때 식량증산 독려와 농업현물세 징수는 불가피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여기에서 곡물수확량의 25%라는 비록 적은 比率이기는 하지만 이의 징수를 위해서는 식량증산 장려는 불가피했겠지만 무엇보다도 북한은 법규정상은 25% 세율을 적용하고 있지만 실제 농촌에서 징수한 실적을 보면 이보다 많은 양의 현물을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金法根外 1989. p.86)

더구나 현물세외에 水稅, 비행기 헌납금, 愛國米, 각종퇴비 등 잡부금 등이 추가로

징수되어 농가경제에 큰 부담을 안겨 주었던 것이다.

이러한 각종 稅負擔은 1950년의 6·25전쟁 준비를 위한 군비축적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였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은 6·25전쟁을 통하여 農村人口의 격감, 농지기반시설의 파괴 등 농촌내부에서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4년에 걸친 전란으로 북한은 37만정보의 경지와 25만두의 축우, 9만본의 과수를 상실하였으며 수많은 농촌노동력을 잃었다. 농촌에서 土地改革으로 인한 生産力 向上이 成果를 거두지 못한 狀況에서의 生産基盤 상실은 北韓 農業에 皮膜적 타격을 준 것이다(古野 1989. p.190).

이러한 상황에서 戰後 농업생산력 유지와 증대를 위해 초기 노동력 및 역우 등 생산수단의 공동이용 등 농작업의 공동실시로 협동화가 시작되었으며 이어 더욱 높은 段階의 협동화가 推進되었다.

1953년 8월 共産黨 第6次 全黨會議에서 농업집단화 방침이 決定되었으며 이는 전후 農業生産을 增加시키기 위한 시급한 方策이었다. 金日成은 1954년 11월 “농업협동화는 농업생산을 급격히 向上시켜 人民生活水準을 높여 주게 될 것이며 그 優越性을 남김없이 발휘할 것”으로 농업협동화를 強調하였다(朝鮮勞動黨出版社, 1968, p.469).

또한 金日成은 “現時點에 있어 농촌진지를 강화하려면 우리 나라 農村을 점차 社會主義的 協同化의 길로 이끌어야 할 것이며 다른 길은 없다. 이것이 우리 農村을 協同化시켜야 할 첫째 必要性이다. 둘째로 우리는 工業 뿐만 아니라 農業까지 計劃的으로

運營하여 工業과 農業을 均衡的으로 發展시키기 위해서도 農業을 協業化해야 한다”고 하였다.

셋째로 농촌에서 모자라는 勞動力과 축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農業을 協同化해야 한다”라고 協同化의 이유를 강조하고 있다(朝鮮勞動黨出版社 1968, p.468).

이로써 北韓에서 農業協同化가 進行되면서 토지개혁으로 농민이 단기간에 향유한 土地에 대한 名目上的 사적 소유권은 끝나게 되었다.

북한이 사회주의 국가로 개조되는 과정에서 초기에 제기된 문제가 農業의 사회주의적 개조였다. 1950년에는 북한은 이미 농업 부문을 제외한 他部門에서도 생산수단의 국유화로 어느 정도 사회주의화가 진행되고 있었다. 공업부문의 사회주의화 비율은 1948년말 현재 98.5%로 진행되었고 농업 부문의 총생산액의 8.6%에 불과하였다. 이는 토지의 사유권 인정으로 인한 농업의 소생산 경제때문이라고 하였다(長田屋, 1980. p. 57). 농업의 소상품생산경제 形態는 生産手段인 토지의 사적소유에 기초를 두므로 資本主義的 要素를 發生시킬 여지가 있다고 인정되기 때문에 農業의 社會主義化는 중소 자영농의 土地나 기타 생산수단을 協同化 내지 國有化시키는 것이었다.

따라서 북한이 후진 농업국에서 出發하여 社會主義國家로 發展하기 위해서는 農業의 社會主義的 개조에 있어 中間段階로서 協同 農業의 역할이 증시되었고 農民을 協業化로 組織하는 것이 과도기 農業政策의 中間段階로 登場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狀況은 社會主義에 있어 일반적인 발전논리였다.¹ 문

제는 社會主義化 路程에서, 時間과 過程의 問題였던 것이다.²

결국 농업협동화의 길은 토지개혁 以後 必然的으로 뒤따르는 하나의 예정된 코스로 보는 것이 社會主義體制 構築의 基本論理라고 볼 수 있다. 이 점에 대해 金日成은 1959년 1월 北韓農業協同組合大會에서 “北韓에서의 農業協同化 運動도 그 준비사업은 이미 戰爭前부터 準備되어 왔으며 農民의 生活에서 그것이 절실한 요구로 되었을 때 비로소 당면한 任務도 提起되었다.”³ 라고 말하고 있다.

結論的으로 土地改革에 따른 土地私有⁴의 인정은 農業의 協同化, 나아가 農業의 社會主義的 개조를 위한 일련의 과정이었으며 과도적, 일시적 조치에 불과하였다.

Ⅲ. 農業協同化의 過程

1953년 8월 農業集團化 方針이 決定된 以後 北韓은 1953~1954년말까지의 시험

¹ 앵겔스는 이 면에 대해 「完全한 共產主義 經濟로 이행함에 있어 中間段階로서 우리가 協同組合의 經營을 廣範圍하게 應用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에 관해서는 마르크스도 나도 의문을 가진 적이 없다.」라고 하였다.

² 앵겔스는 이 점에 대해 「協同組合을 보다 높은 形態로 이행시켜……

그것을 개별로 특정한 경우에 어떻게 실행하는 가는, 그 경우의 狀況에 따라, 또한 어떠한 狀況에서 公權力을 支掌하는가에 따라 決定된다.」(大岐, 1981. p.2)

³ 朝鮮勞動黨出版社, 「金日成著作選輯 第4卷」, 1968. p.246

⁴ 앞에서 언급했듯이 소위 북한이 주장하는 土地私有라는 것은 實買, 抵當 및 讓渡는 일체 인정치 않으므로 실제로 所有權을 認定한 것이 아니고 利用權, 즉 耕作權만 인정한 것에 불과하다.

段階를 거쳐 1955년부터 全國적으로 農業의 協同化를 시도하였다. 1954년 1월 「農業協同組合의 組織問題에 대하여」라는 北韓勞動黨의 결정사항에 의해 3단계의 集團農場形態를 설정하고 사회주의 농업집단화의 정형적 단계를 밟게 되었다.

사회주의 협동조합의 조직형성은 <표 1>과 같다. 북한이 검토한 협동화의 3형태는 다음과 같다. 제1형태는 역축, 농기구의 공동이용에 기본을 둔 생산수단 이용조합으로서 농작업만 공동으로 하고 사회주의적 분배는 적용하지 않는다.

제2형태는 토지의 사적 소유를 유지한 채 협동조합에 생산수단을 출자하여 공동경영하고 勞動日과 출자한 토지에 따라 분배하는 형태이다. 분배는 收穫物에서 일체의 생산비와 현물세, 조합적립기금, 사회·문화기금을 공제한 후 토지점수와 노동점수에 따라 분배된다.⁵ 제3형태는 주택, 택지를 제외한 모든 생산수단이 협동조합으로 통합되고 노동에 따라 분배하는 협동조합의 가장 고차적 형태이다.

이 형태에서는 토지를 비롯한 모든 생산수단이 공유화된다.

북한은 3가지 협동조합 모델을 제시하고 선택을 농민에게 맡긴 것으로 선전하고 있다.⁶ 협동조합을 확대하기 위하여 1953~1954년의 시험단계에서 군 단위로 1~2개

소의 시험협동조합을 조직하여 집중 지원함으로써 “협동경리가 개인농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시범하였다.

1953년 806개소, 11,697호로 협동조합을 조직하여 비료 등 생산자재를 우선 지원하고 현물세도 협업은 20% 이하로 낮추었다. 이로써 북한의 농업협동화는 급속히 추진되었다.

1953년 농업의 협동화가 추진된 이후 불과 6년만에 협동화는 <표 2>와 같이 종료되었다. 1년만인 1954년에 이미 협동화 비율은 30%를 상회하였고 1957년에는 93.7%, 1958년에는 100%의 협동화가 추진되었다. 이와 같은 급진적인 협동화 추진에 대해 사회주의 중주국인 소련까지도 「農機械의 供給이 보장되지 않은 條件에서 集團化를 强행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되었다.⁷

협동조합 형태별 추이는 <표 3>과 같이 협동화 초기부터 제3형태의 조합으로 추진되었으며 제2형태의 조합은 1954년 21.5%였으나 곧 제3형태의 조합으로 전환되었음을 보여준다.

6년이라는 단기간에 농업협동화가 종료되기에는 이에 따른 농민의 반발과 북한정권의 강제가 있었을 것이다. 대체로 사회주의국가에서 집단화를 추진할 경우 1단계에서 2단계로 전환할 때 생산력을 중시하는 계층인 증농 계층에서 생산수단의 공유과정에서 마찰이 일어나고, 소농계층은 토지에 대한 집착 즉, 가족 경영의 자유라는 점에서 반발이 일어난다.⁸

⁵ 第2形態의 組合에서 土地에 대한 分配比率는 순수입의 20%를 넘어서는 안되며, 연간 120일 이상의 勞動日數를 取得한 경우에만 土地에 대한 分配를 받을 수 있다. (長田屋 1980. p.64)

⁶ 農民의 의사를 무시하고 일거에 높은 形態의 組合을 組織한다든지 혹은 기계적으로 낮은 形態의 組合에서 높은 段階의 조합으로 發展시키는 것은 잘못으로 간주되었다. (長田屋 1980. p.64)

⁷ 北韓勞動新聞, 1963.10.18 解說

⁸ 阪本 楠彦, 「農業經濟研究 45-4」, 1974. p.154~155.

표 1 社會主義 協同組合의 組織形態

區 分	第 1 形態	第 2 形態	第 3 形態
構 成 內 容	작업만을 공동실시 하는 고정적 노력호조	토지를 통합하여 협동경 영하고 반사회주의 형태	토지와 기본생산수단을 결합하여 통합운영
分 配	생산수단 사적소유, 개인 경영	생산수단을 출자 토지와 노동력에 의해 분배	수단통합, 노동에 따라 분배
모 델 (소 련)	도 스	알 텔	콜 호 스
規 模	소 규모	대 규모	거 대 화

표 2 北韓의 農業集團化, 1953~1960

年度	協 同 農 場 數	農 家 戶 數 (千 戶)	協 同 農 場 耕 地 面 積 (千 町 步)	農 場 當 戶 數 (戶)	農 場 當 平 均 規 模 (町 步)	農 家 戶 當 面 積 (町 步)	總 耕 地 中 集 團 化 比 率 (%)
1953	806	12	11	14.9	13.6	0.9	0.6
1954	10,098	333	576	32.9	57.0	1.7	30.9
1955	12,132	511	885	42.1	72.9	1.7	48.6
1956	15,825	865	1,397	54.7	88.3	1.6	77.9
1957	16,032	1,025	1,687	63.9	105.0	1.6	93.7
1958	3,843	1,055	1,791	274.5	466.0	1.7	100.0
1959	3,739	1,102	1,790	294.6	466.2	1.6	100.0
1960	3,736	1,111	1,789	297.4	466.4	1.6	100.0

주: 1958년 협동조합수가 감소한 것은 조합의 통합으로 조합규모가 대형화된 것에 기인된다.

資料: 「朝鮮中央年鑑」(1953~1964), 「Economic Returns of National Economy of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1961), 사뮤엘 모악, 「북한의 農業集團化 政策分析」, 「北韓」, 1974. 8. 1

표 3 形態別 協同組合의 推進

年度別	組 合 數	第2形態(%)	第3形態(%)
1953년말	806	—	—
1954년말	10,098	21.5	78.5
1955년말	12,132	7.8	92.2
1956년말	15,825	2.5	97.5
1957년말	16,032	1.2	98.8
1958년8월말	13,309	0	100.0

資料: 金漢周, 우리나라에 있어서 마르크스·레닌주의 農業綱領의 승리적 실현, p.102.

朝鮮勞動黨出版社, 長田屋, 社會主義朝鮮의 經濟에서 再引用

북한에서도 농민의 반발은 있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레닌의 自發性的의 原則과 階級政策을 적용하였다. 그러나 레닌이 農民의 자발성 유발에 농민 1세대가 경과될 것이라고 예상한 것을 단기간에 극복한 것에는 강제와 무리가 수반되었다. 북한은 “빈농에게 튼튼하게 의거하고 중농과의 동맹을 강화하여 부농을 철폐하고 그것을 점차 개조한다”는 계급정책 아래 계급투쟁으로 개인농을 탄압하였으며 자발성의 원칙에서도 “농업협동화 과정에서 자발성의 원칙

을 준수한다는 것을 결코 이 운동을 자연발생에 방임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사회주의제도가 그러한 바와 같이 농촌에서의 협동경리제도는 저절로 발생할 수 없으며 공고히 발전될 수 없는 것이다. 여기에는 당과 국가의 강력한 지도와 傍助가 요구된다”고 해석하고 있다(朝鮮勞動黨 出版社 1961. p.20).

1958년 농업의 협동화 추진이 완료된 후 북한의 사회주의적 생산관계는 <표 4>와 같이 완료되었다. 북한에 있어 농업협동화는 크게 3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제1단계인 토지개혁으로 협동화를 위한 기초를 닦았으며 제2단계인 협동조합의 組織化를 강력한 權力構造에 의해 제3형태로 조직하였다.

북한은 협동화가 완료된 후 1959년부터 다음 단계인 협동조합의 강화를 추진하였다. 1959년 1월 농업협동조합기준규약을 만들고 1960년에도 農業機械賃耕所를 農業機械作業所로 개편하였으며 1962년에는 농업협동조합을 協同農場으로 개칭하였다.

농업생산에서 분업과 협업은 가능하며 새

로운 기술 보급과 대경영에 의한 규모의 유리성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의 협동조합에서의 문제점은 조합의 운영, 분배에서 가입, 탈퇴의 자유가 생략된 경제외적 요소에 의해 협업이 추진되었고, 북한농업의 특수성과 조건을 무시한 대형조합으로 추진된 점이다. 또한 중요한 문제점의 하나는 조합 설립과정에서 출자금제도를 설정하지 않은 점이다. 이 점에 대해 북한은 “출자금제도를 설정하지 않은 것은 조선의 협동조합제도가 강력한 국가적 지원으로 뒷받침되고 있고 정신적으로도 협동조합과 조합원의 일체성이 극히 강했기 때문이다”(朝鮮科學院 經濟法學研究所 p13)라고 강변하고 있다. 이로써 농민을 토지는 국유화된 것이며 협업화는 예정된 사회주의경제체제 확립을 위하여 농민을 집단화시킨 것에 불과하였음을 알 수 있다.

IV. 北韓의 農業管理體系

1. 農業管理體系

북한은 1953년 面을 없애고 里를 대형화시키는 행정개혁을 실시하였다. 이에 따라 농업협동조합 즉 협동농장도 대형화하여 郡 중심으로 움직이게 되었으며, 중국의 人民公社와 같은 政·社 합일의 농업관리체계를 일단 구축했다.

북한은 1961~1962년 농업지도관리체계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을 실시하였다. 1960년 이전 中央, 道人民委員會, 郡人民委員會 農業部로 이어지던 농업관리체계를 전문적

표 4 社會主義的 生産比率의 推移

單位: %

區 分	1946~ 1949	1959
國民所得中 社會化 比率	14.8	100.0
工業生産의 社會化 比率	72.4	100.0
農業生産의 社會化 比率	3.2 ¹	100.0

주: 농업생산의 경우 1949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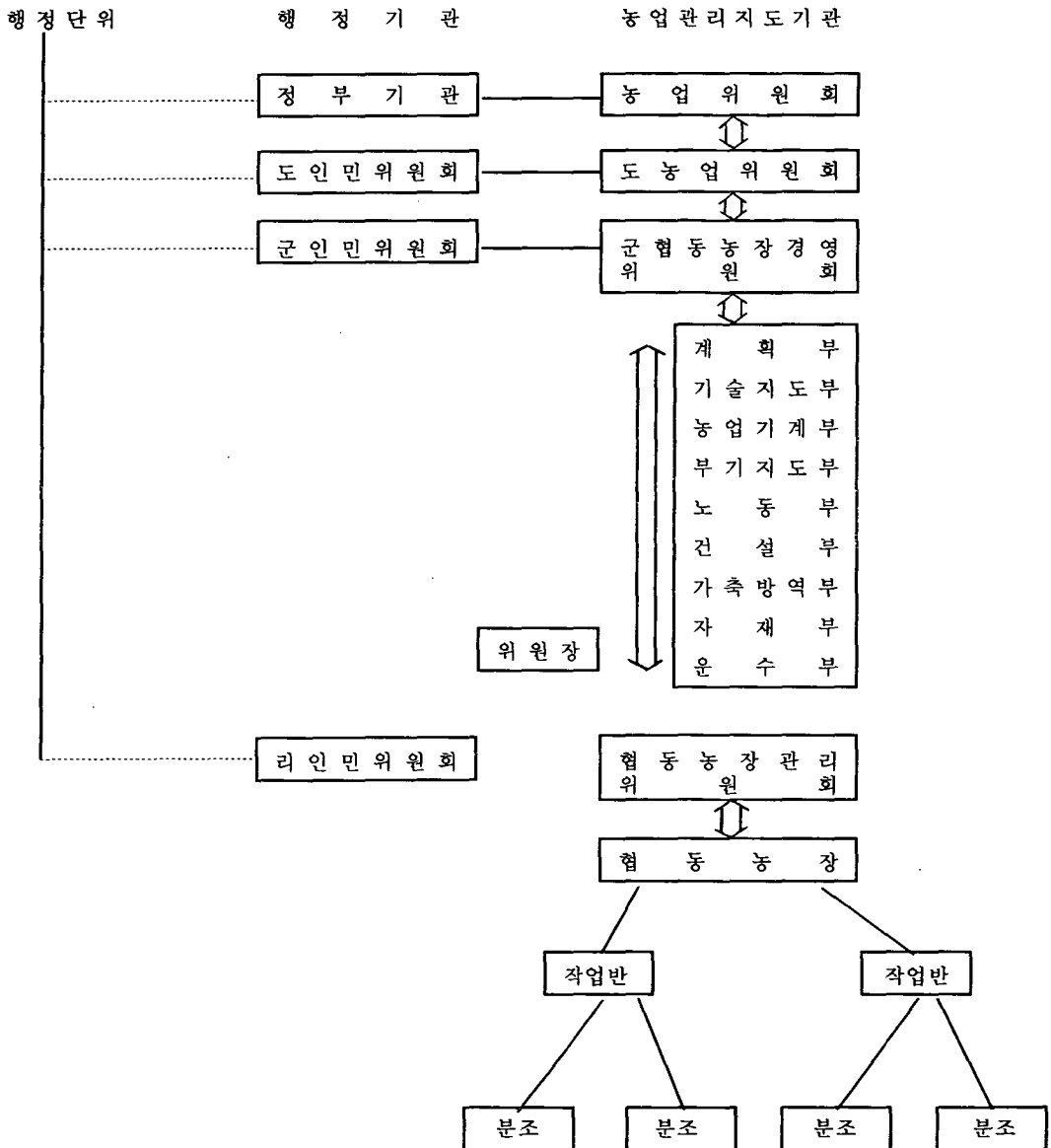
자료: 村上保男, “朝鮮民主主義共和國의 協同農場などの現況”

인 농업관리지도체계로 전환한 것이다. 당시 전환된 농업관리체계는 <그림 1>과 같다.

1961년 12월 12일 내용결정 제157호로

군단위 국가농업 지도기관으로 군농업 협동조합 경영위원회가 설립되었다. 군협동농장 경영위원회는 이제까지 국영 혹은 국가소유였던 농기계작업소, 농사시험장 등 농업지

그림 1 北韓의 農業管理 指導體系



資料:北韓統計集, 共產權問題研究所, 1971.

도기관을 일괄 흡수하여 협동농장의 영농을 지도하는 말단 국가농업기관으로 재편한 것이다. 그 결과 협동농장과 국영농업기업소를 단일계획에 의해 지도하는 관리체계가 확립되었다.

북한은 그 결과를 “농업의 관리를 공업관리 수준으로 접근시켜 전인민적 소유와 협동적 소유의 유기적 결합을 높이게 되었다”라고 하였다.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는 군내에 있는 여러 가지 작업소를 운영하여 단위협동농장의 계획화 사업을 방조하고 기술지도, 노동행정, 簿記檢閱과 土地開墾 및 區劃整理, 農村建設을 담당한다.

군 단위 농업경영위원회가 설치된 후 1962년 10월에는 道農村經營委員會를 신설하여 종전에 農業省에서 수행한 농촌계획업무를 담당하게 하였다. 이것은 농업의 지역성에 비중을 둔 조치였다. 또 같은 시기에 종래의 農業省을 승격, 개명하여 中央農業委員會가 설치되었다. 中央農業委員會는 政務院 소속으로 전국 농업계획의 작성, 지도를 담당하고 있다.

농업관리체계의 전환은 1960년까지 농업관리를 담당하고 있던 군인민위원회의 전문적 지식의 결여로 인한 행정적 관리의 결합을 극복하기 위한 관리방법으로 대두된 것이다. 이러한 관리체계의 전환은 1960년 2월 江西郡, 靑山里에서 행한 金日成의 현지교시에 의한 것을 「靑山里方式」 또는 「靑山里精神」으로 불린다.

2. 協同農場의 運營體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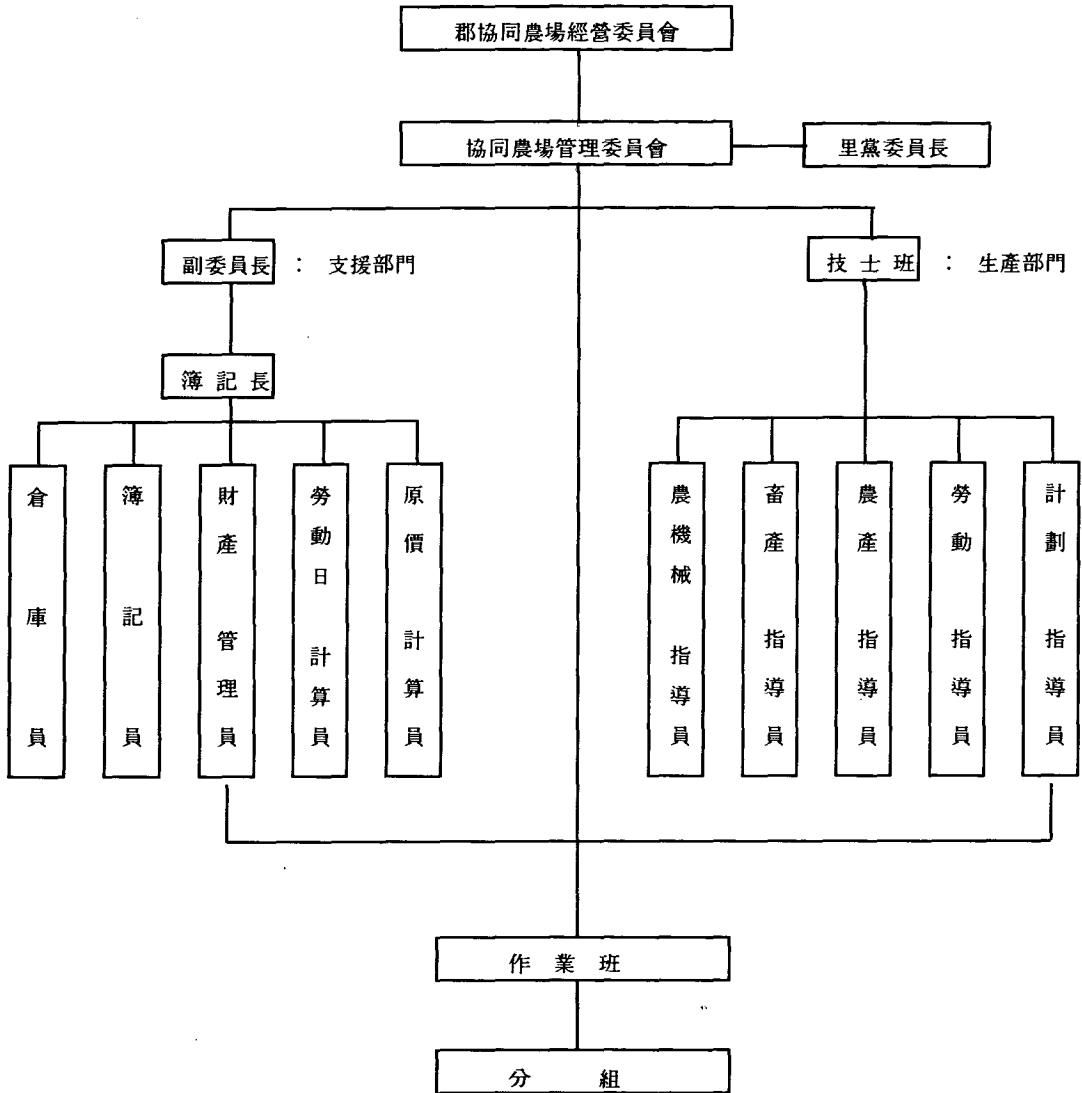
1958년 10~12월 북한은 행정단위인 면을 없애고, 里를 확대하였다. 또한 농업협동

조합을 리단위로 통합하는 협동조합의 합병운동을 전개하였다. 이것은 중국에서 政·社合一 政策下에 鄉單位의 人民公社를 추진한 것과 유사한 방향이었다. 협동조합의 통합은 단순한 경제적 차원이 아니라 완전한 공동체적 기구를 지향한 것이다. 그 특성은 첫째, 里人民委員會長이 협동농장 관리위원장을 겸임하여 행정단위와 생산단위가 결합된 것이며 둘째, 협동조합내에 존재하던 소비조합 및 신용조합 등 모든 농민단체를 통합하여 협동농장에 생산, 소비에 대한 포괄적 기능이 부여되었으며 셋째, 협동조합이 경제활동의 교육, 문화, 후생을 포함한 구역내 전체의 생활체계를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되어 모든 생산, 분배, 소비가 단일계획에 의해 수행되는 형태로 개편된 것이다. 따라서 군·도의 관리체계 개선도 협동농장의 관리를 효율화하기 위한 조치였다.

協同農場은 〈그림 2〉와 같이 산하에 각 작업반이 있으며 다시 작업반은 작업단위 조직인 분조로 구성되어 있다. 협동농장은 전국적으로 약 3,300개소 있으며 평균 300호의 농가가 약 500ha의 경지를 경작한다. 협동농장에서 5~10개의 작업반이 있고 1작업반에는 50~100인이 소속되어 있다. 작업반은 3~4개 분조로 구성되고 분조당 15~20인이 소속되어 있다. 각 작업반은 대체로 단일부문에 종사하고 있으며 생산하고 있는 작물에 따라 穀山班, 야채반, 과수반, 공예작물반 등으로 구분된다.

협동농장의 운영은 작업반의 농장내 지원부문인 사무원과 군작업반 소속인 技師 및 지도원의 3개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고 농장운영의 총책임은 里黨委員長을 겸한 협동

그림 2 協同農場的 運營



資料:北韓統計集, 共產圈問題研究所, 1971.

농장관리위원장이 담당한다. 농기계지도원 등 기사는 군단위에 소속된 기업소속 직원으로서 기본임금은 소속기관에서 받지만 소속 농장의 증산에 관심을 두기 위한 조치로 협동농장의 성과에 따라 추가 분배를 받고

있다. 모든 단위협동농장의 운영은 독립채산을 하고 있으나 농장의 생산 목표 설정, 생산 성과의 평가는 郡協同農場委員會의 통제를 받고 있다.

V. 協同農場의 分配

북한의 사회주의경제는 생산수단의 공유를 특징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에서는 「노동에 따른 분배」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노동자체에 차이가 있는 이상 분배에도 차이를 둔다면 생산은 급속히 발전한다”는 관점에서 분배되고 있다.⁹ 이러한 점은 “사회주의하에서는 집단과 개인의 이익은 본질상 일치한다. 그러나 이것이 그들간의 일체의 모순이 배제된, 즉 즉각적으로 일치하는 것이 아니다”는 관점에서 농촌관리에서 분배과정에 물질적 관심을 적용하고 있다.

1. 協同農場의 分配過程과 基本配分の 構成

협동농장을 중심으로 하는 농업부문은 타 부문과 달리 소위 全人民的 所有가 아닌 협동적 소유관계이기 때문에 분배 과정에서 농장의 경영성과를 농장원의 노동투하로 분배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집단경영에서 소득분배문제는 참여자의 평등성을 상치시키는 경우가 많다. 농업은 계절적 분업이기 때문에 동일시기에 「분업에 기본을 둔 협동」의 조직이 어렵고 노동대상이 되는 제작업의 질적 검사가 어렵다. 따라서 작업의 전체를 생산량으로 평가하는 것이 쉽다.¹⁰

⁹ 현재 北韓에서의 分配는 勞動力에 따른 分配이지 「必要에 따른 分配(=共産主義的分配)」는 아니다. 이러한 勞働에 따른 分배는 公産主義적 分배가 실현되기까지의 과도적인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高懶淨, 1978. p.51~52)

¹⁰ 阪本楠彦, 앞의 책 1974. p.156

협동농업 초기에는 협동농장 전체를 한 단위로 하는 평균적 분배방식이 적용되었다. 그러나 개인경영에서 협동화로 이행된 후 협동농장의 운영이 순조롭지는 않았다. 김일성이 “적지 않은 농민들이 자기 먹을 것만 벌면 그만이라고 생각하고 나라의 이익은 어떻든 자기에게 이로워야 좋아한다”, “사회주의의 물질적 기초는 쉬워도 사람들의 의식을 개변하기는 어렵다”(朝鮮勞動黨 出版社 1968. p.457, 416)고 말한 것과 같이 개인의 노력이 개인별 성과로 돌아오지 않는 협동생산에서 농장원의 자발적 근로를 유인하기에는 문제가 있었다.

현재 협동농장의 분배는 농장의 총수확고에서 제비용을 뺀 수입을 각 구성원의 노동일수에 따라 평균적으로 분배하는 기본분배와 작업반우대 및 분조도급에 따른 보충분배로 구성되어 있다.

우선 가장 기본적인 분배법인 기본분배의 결정과정은 다음과 같다.

기본분배는 협동농장의 분배에 있어 가장 기본을 이루고 있고 그 계산기초는 농장원의 노동일(努力日)에서 출발한다. 사회적 분업으로서 농업생산의 특성을 노동의 투입 시간과 생산물의 산출시기가 일치하지 않는다. 노동과정에서 지출된 노동의 양과 질은 생산이 완료된 후에 평가되기 때문에 노동투하의 평가시기와 분배시기를 일치시킬 수 없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시키는 방법으로 협동농장에서 「勞働日」이라는 계산 단위가 채택되고 있다. 「勞働日」은 노동 지출의 척도인 동시에 분배에 대한 척도로 사용된다. 또한 노동일은 개별 작업반으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협동농장을 단위로 설정된 것

표 5 北韓農作業 1人當 基準作業量:水稻作

區 分	級	組織人員	1인당 기준작업량	비 고
苗 運 搬	4	1	3,000坪	
移 秧	5	1	130~170坪	150坪 基準 山間地帶 100~130坪
手 除 草	5	1	200~300坪	條件이 좋은 곳은 400坪까지
피 사 리	3	1	500~700坪	
收 穫 作 業	5	1	200~250坪	
脫 穀 精 選	5	12~14	350~400kg	動力脫穀機 基準

資料:日本朝鮮研究所『最近の 朝鮮の 協同農場』, 1967.

이다.

勞働日은 농작업별 난이도에 따라 작업기 초계수와 작업량, 작업의 질에 따라 평가되며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D=C \cdot (O/S) \cdot (Q/100)$$

여기서, D : 노동일수

C : 작업등급계수(0.5, 0.75, 1, 1.25,

1.5, C = $\frac{\text{작업급수}}{\text{평가기준}}$ 로 표시됨)

O : 1일 작업실적

S : 1일 작업정량

Q : 작업의 실적계수

노동에 따른 작업의 등급은 5단계로 평가되며 각 작업별 기준 작업량은 <표 5>의 예와 같다. 농촌작업유형에 따라서 각기 다른 규정이 적용되도록 되어 있다. 각자의 노동일수는 자기가 종사하고 있는 작업의 종류와 북한정권이 정한 작업표준에 대비한 작업실적의 양과 질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동일작업에서의 노동일수는 작업표준에 대비한 작업실적에 비례한다. 한편 농장원은 연간 기본 노동일을 충족시켜야 분배에 참여하며 의무노동일수는 남자는 연간 230일, 여자는 180일이다. (古野雅

美 1988, p.193). 개인별 노동일와 평가는 작업반별로 평가된 후¹¹ 개인별 勞働手帖에 기장되며 연말 결산 분배의 기준이 된다.

決算分配의 과정은 다음과 같다. 협동농장관리위원회는 생산 및 노동결산서를 작성하여 농장의 작업반원, 郡黨幹部, 관리위원회 간부, 농업근로자동맹, 社勞靑 간부의 심의를 받은 후 郡協同農場經營委員會에 제출한다. 郡은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각 협동농장의 결산서를 심의하여 생산량과 비용 및 분배량을 확정시킨다. 협동농장은 郡의 심의를 얻은 후 총수입에서 농장별 생산비용을 제한 후¹² 수익은 노동일에 따라 개인에게 분배한다.

협동농장에서 농장원이 분배받는 몫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W_i = T_p \cdot D_i / \sum D_i \cdot f$$

¹¹ 협동농장 초기에는 3인의 평가위원이 반원의 노동일을 평가하였으나 최근에는 작업조전원이 모여 작업자체가 개인별 노력결과를 결정하는 “발지원화방식”을 택하고 있다.

¹² 평남 강서군 약수리 평동농장의 사례로 1970년 생산비는 종자대 2%, 사료대 1%, 비료대 3%, 농기계사용량 2%, 관개비 4%, 농기 및 구입비 10%, 공동축적비 20%, 관리운영비 5%, 원호기금 1.5%로 총 조수입의 48.5%에 달한다(吳基完). 또다른 보고에 의하면 총비용이 64.5%에 달하고 있다.

여기서, W_i : i 노동자가 분배받는 생산량 혹은
농업 임금

T_p : 분배총량 (생산량—공제량)

D_i : i 노동자의 확정 노동력일수

$\sum D_i \cdot f$: f 협동농장의 전노동자의 노동
일수 총계

위 식에서와 같이 개인의 분배몫은 개인의 노동일수에 의해 결정될 뿐만 아니라 같은 농장 노동자의 노력일과도 관계가 있다. 또한 분배총량(T_p)과 개인노동일(D_i)이 일정한 경우 전체 노동일수($\sum D_i \cdot f$)가 적어야 개인의 분배(W_i)가 커진다. 그러나 이러한 조건은 농업인구가 실질적으로 감소할 때 현실이 가능하며, 오히려 협동농장의 과잉 취업상태일 때 개인의 노동일과 분배는 乘離될 뿐인 것이다.

2. 補完分配

가. 作業班 優待制

협동농장 전체를 한 단위로 한 기본분배는 작업의 책임한계와 경영 성과가 직접 연계되지 않기 때문에 구성원이 증산보다 노동일의 확보에만 관심을 두는 폐단이 발생하였다. 북한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보완분배제를 채택하였다. 그 첫단계로서 도입된 것이 作業班優待制이다.

작업반우대제는 1960년 2월 김일성의 「靑山里 現地指導」에서 채택된 제도로서 작업반에게 일정 생산목표를 주고 초과 수행된 부분을 추가로 분배하는 것이다. 계획과제보다 10% 낮은 수준을 우대기준으로 설정하여 초과된 부분은 추가분배하는 반면, 미달된 경우 부족분의 5~15%를 분배에서 공제하는 것이다. 따라서 작업반 우대

는 농장전체의 보충 분배분의 증가를 의미하는 동시에 기본분배의 감소를 의미한다.

작업반우대제의 실시로 능률에 대한 일부 인센티브가 도입되었다. 그러나 제한된 총분배 몫에서 보충분배를 늘리는 것은 다른 작업반의 분배몫을 삭감하는 결과가 되며 노동과 생산결과가 직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작업반마다 계획달성보다 노동일수의 확보에 관심을 두는 경향을 근본적으로 해소시킬 수는 없었다.

나. 分組 都給制

1965년 작업반우대제를 병행하여 分組都給制가 도입되었다. 이 제도는 작업반아래 단위인 “分組에 토지를 비롯한 역우, 농기구 등과 노동력을 고정시켜 면적당 수확고와 노동투하계획을 연초에 과제로 주고 분조에 생산책임을 주어 생산결과에 의해 분조원의 노동일을 재평가하는 노동지불형태”이다. 종래 유동적인 작업단위였던 分組가 집단농장의 소경영단위로서의 위치를 얻게 된 것이다. 분조도급제에서의 개인별 분배방식과 기본분배 및 작업반우대제와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기본분배의 개인 분배 몫 S 는 다음 식으로 표현된다.

$$S = D \times M$$

여기서 M 은 개인별 연간 노동총가동일수이며 D 는 노동일당 분배단위로 총분배기금을 농장내 노동력총가동일수로 나눈 것이다. 그리고 총분배기금은 총수입에서 비용과 공공기금을 제한 것이다.

작업반 우대제하에서 개인 분배몫 S' 는 다음과 같다.

$$S' = (D' + Y) \times M$$

여기에서, D' : $\frac{\text{기본분배기금}}{\text{농장총가득노동일수}}$
 Y : $\frac{\text{작업반가득기금}}{\text{작업반총가득노동일수}}$

分組都給制에서의 個人分配額 S' 는 다음과 같다.

$$S'' = (D'' + Y'') \cdot M \cdot \alpha$$

여기에서 α : $\frac{\text{분조계획투하 노동일수}}{\text{분조실노동일수}} \times \text{계획수행율}$

D'' : $\frac{\text{기본분배기금}}{\text{재평가된 농장총가득노동일수}}$

Y'' : $\frac{\text{작업반우대기금}}{\text{재평가된 작업반총가득노동일수}}$

分組都給制에서는 작업반의 목표달성 삭감제도가 없다. 그 이유는 목표 미달인 경우 분담단계에서 자동적으로 삭감을 받게 되면 D'' 는 농장내에서 불변이지만 Y'' 가 작업반별로 움직이고 α 가 분조별로 달라짐으로써 작업반 단계, 분조 단계에서 이중으로 생산결과와 분배몫이 결부되어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分組都給制의 도입을 "농업에 있어 노동지출의 시기와 분배 시기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노동지출의 척도로 적용되는 노동일을 그대로 소비 척도로 이용할 경우 분배에 불가피하게 평균주의적 요소가 들어간다. 분조도급제는 지출노동력에 대한 노동일의 평가를 생산량에 의해 재평가함으로써 노동일의 결점을 극복했다. 이것은 노동일 이용의 새로운 측면(金喆濟, 1966)"으로 설명하고 있다.

分組都給制의 실시로 북한은 농장원의 물적 욕구를 인정하고 평균주의적 요소를 상당부분 배제함으로써 농업생산에 대한 개선

욕구를 유인코자 하였다. 분조도급제의 도입은 협동농장의 운영에 많은 변화를 요구하게 되었다. 그 첫째는 분조의 편성문제이다. 분조는 地緣單位로 조직하고 동일가족은 한 분조에 속하게 하며 분조의 담당토지는 거주지 인근에 배치된다. 또한 분조장은 분조원 중 영농경험이 많은 實農軍이 담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러한 점은 북한이 사회주의 원칙에 의해 배제해 온 개인주의적, 가족주의적 요소를 인정한 것이다. 또 하나는 협동농장의 경영구성의 재편이다. 분조는 종래 횡적인 분업관계를 유지해왔다. 그러나 분조별 최종 생산성과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종적인 일관작업계열로 재편되어야 한다. 재배작목에 따른 분조간 생산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종래의 작업반의 전문화 방향에서 분조별 복합경영의 도입이 불가피하다. 또한 노동력 운용면에서도 다른 분조의 도움이 없이 주어진 토지에서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최수수기를 기준으로 분조원이 확보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은 분조의 계절적 과잉취업을 초래한다. 분조의 재편으로 인한 분조의 복합경영화, 일관작업계열화는 협동농업이 추구해 온 부문분업과 농장의 대형화에 따른 규모의 경제추구에 역행하는 것이다.

分組都給制는 고정된 농지에, 고정된 노동력이 주어진 생산수단을 활용하여 경영한다는 점에서는 최근 소련 및 중공에서 도입하고 있는 集團請負制 및 各戶經營制¹³와

¹³ 소련은 1986.2월부터 집단농업을 완화하여 농가청부제를 일부 도입하고 있다. 중공에서도 1979. 9월부터 각호경영제가 인정되고 있으며 토지를 농민에 임대하는 형식으로 경영권을 인정하고 있다.

유사한 면이 있다. 그러나 분조에서 노동투하계획, 생산목표가 미리 제시되고 個人—分組—作業班—協同農場 단계로 분배가 단계별 제한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청부제로 보기는 어렵다. 북한도 협동농장의 개인청부화는 부정하며 분조도급제를 “생활기본단위와 생산기본단위를 일치시켜 농민의 집단생활을 강화하며 공산주의 사상으로 무장시키며”, “노동에 따른 사회주의적 분배원칙을 보다 정확히 관철시켜 집단이익과 개인이익을 조화시키는 제도”로서 집단농업을 강화시키는 방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농업의 협동화가 완료된 후 김일성은 1964년 2월 25일 「우리나라에 있어서 社會主義 農村問題에 관한 테제」를 발표하였다. 「農村問題 테제」는 농업, 농민문제를 토지개혁과 농업협동화가 완료된 후 사회주의하에서 농촌을 발전시키고 농업생산력을 발전시키기 위한 원칙으로서 다음 세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 농촌에서 기술혁명 및 사상혁명을 철저히 수행하는 것.

둘째, 농민에 대한 노동자계급의 지도, 농업에 대한 공업의 원조, 농촌에 대한 도시의 지원을 모든 면에서 강화하는 것.

셋째, 농업의 지도와 관리를 끊임없이 공업의 기업관리 수준으로 접근시켜 전인민적 소유와 협동적 소유의 결합도를 높이고 끊임없이 전인민적 소유로 접근시켜 나가는 것이다. 「農村테제」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¹⁴ 分組의 責任生産目標는

$\frac{\text{과거 3년간 생산} + 3\text{년중 최고생산량}}{4}$ 로
계산된다.

북한은 현재의 토지의 협동적 소유를 더욱 높은 차원의 전인민적 소유관계로 끌어올리려 노력하고 있다. 또한 농촌의 문화, 교육기술의 삼대혁명을 추진하여 농업생산력을 발전시켜 도농간의 격차를 축소하는 것을 정책목표로 택하고 있다. 북한은 토지개혁, 농업의 집단화를 통하여 생산기반을 정비하고 농촌의 전기화, 수리화, 화학화, 기계화 등 이른바 기술혁명을 통하여 어느 정도 농업생산성을 증진시킬 수 있었다라고 발표하고 있었다.¹⁵ 그러나 협동농업이 갖는 개인의 의욕과 창의가 무시된 集體生産은 한계가 있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분조도급제 등 개인의 물적 욕구를 유인하는 제도를 일부 도입하고 있다.

VI. 北韓 農業協同化의 問題點

북한의 농업은 지금도 협동농업이라는 생산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협동농장을 제약하는 당면한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集團經營이 “클수록 좋다”는 논리하에 面단위로 조직되었다. 경영·기술상의 필연성이 없는 대규모 농장은 주민의 정치적 통제가 우선한 것이었으며 경영효과의 극대화에 제약을 주고 있다. 둘째, 북한은 협동농장의

¹⁵ 北韓의 水稻 및 옥수수 생산성은 세계적인 수준인 것으로 선전하고 있다. 그러나 발표숫자가 특정지역, 특정농장의 수치이며 전년대비 몇 % 증산이라는 식으로 발표되어 있고 正確度는 판정하기 어렵다. 中國의 學者에 의하면 北韓의 농업수준은 중국과 비슷한 수준에 불과하며 세계적 수준이라는 것도 선전자료에 불과하다고 한다.

경영에 기업적 운영방식을 도입했다고하나 郡市道—中央으로 연결되는 관료적 통제는 지나친 중앙집권성의 강화로 나타나며 효율성의 정체를 초래하고 있다. 세제, 협동농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본장비가 충분치 않은 상태에서 급속한 협동화가 추진되었다. 최근 농업의 기계화, 과학화가 이루어졌다고는 하나 농촌의 과잉취업하에서의 기계화는 투자효율의 정체를 초래하고 있다. 부문간 노동의 유동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과잉 노동은 인구의 부양이라는 “필요에 따른 분배”라는 측면에서 피할 수 없는 상황일 것이다. 네제, 협동농장의 운영에서 경영, 기술적 측면보다 사상·문화적 측면이 강조되고 있다. 이는 북한이 「주체사상」, 「주체농업」으로 선전하고 있는 것과 같이 “主體主義的”, “精神主義的” 경향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교조적 지도에 대한 농민의 자각이 일어날 때 체제이탈로 나타날 것이다.

북한은 농업에 있어 토지를 비롯한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를 폐절하는 전인민적소유로 접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농업도 공업부문과 같이 기계적 노동은 농업생산의 정체를 초래할 것이다. 또한 토지의 肥沃度, 농장의 위치, 작물 종류 등 생산 조건에 따른 差額地代로 일어나는 협동농장간의 소득격차를 해결하지 못하는 한 全人民的 所有의 실현은 불가능한 명제가 될 것이다.

VII. 結 論

북한농업의 사회주의화는 1958년 8월 모든 私有農을 집단화함으로써 완료되었다.

오늘날 북한에서 협동농장과 국영농장의 두 유형만이 존재하는데 1960년 기준으로 본다면 북한농업생산의 84%는 전농지의 약 94%를 점하고 협동농장으로부터 생산되고 있다.

1953년 이후 소련 유형을 모방한 농업집단화를 추구함에 따라서 개인소유의 농지는 급격히 감소되어 갔고 집단화 초기 단계에서 북한은 각 군에 여러 개의 농장을 두어 대규모 영농의 경제적 효과를 시위하고 자발적 참여의 원칙을 세웠다. 그러나 1958년까지 모든 농민들은 농업집단화 체제에 강제편입되었다.

農業集團化로 인한 이러한 私有農 철폐는 농민들로 하여금 능동성과 창조성이 결여되어 농업정책이 계속 실패를 초래하는 원인이 되어 왔다. 더욱이 제1단계 土地改革, 제2단계 協同農場化, 제3단계 生産性提高를 위한 剌戟方式 조작이라는 「三段階 共產化」작업으로서 여러제도를 도입, 노력했으나 북한 농촌은 모순과 부조리가 팽배되어 왔다.

특히 分組都給制를 도입하여 賞與穀을 위한 방식을 채택, 농민들의 노동의욕을 자극했지만 오히려 농민을 혹사하는 착취제도라는 점에서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결국 북한이 내세우는 모든 제도가 노동력을 유치·개발하여 생산성을 제고시키는 자극 방식으로서의 작업반 우대제나 분조도급제

등과 같은 물적 자극은 채택할 수 없다는 것이 자명하다고 보아진다.

북한의 1960년의 협동농장당 평균 농가 호수는 297호이고 평균 경지면적은 466정보이다. 1957년에서 1958년에 이르는 사이에 협동농장당 평균 농가호수가 크게 달라지고 있는 것은 종래의 里 행정구역내의 지역의 수개 소규모 협동농장을 규모가 큰 단일농장으로 강제 통합시킨데 기인한다. 이러한 원인은 규모의 경제에서 오는 이점 때문이며, 규모가 클수록 농업의 기계화가 가능하고 협동농장원들의 관리·기술능력도 향상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또한 규모가 큰 농장은 정권의 직접적인 통제와 감독하에 두어 보다 능률적인 경영을 피할 수 있는 이점도 동시에 추구할 수 있게 된다. 그 결과 里 행정구역은 곧 하나의 협동농장을 형성하게 되었다.

행정조직은 里 인민위원장이 그 지역 협동농장의 관리책임을 지며 里 단위 협동농장산하에 농민소비조합과 신용조합을 두어 里는 그 지역의 종합적인 경제단위로서 가장 낮은 수준의 경제정책 결정기관 역할을 수행한다.

參 考 文 獻

- 사회과학원연구소, 「경제사전」 사회과학출판사. 1970.
- 日本朝鮮研究所編, 「最近の朝鮮の協同農場」, 東京. 1967.
- 日本朝鮮研究所編,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國民經濟發展統計集」, 1946~1963. 東京, 1965.
- 朝鮮科學院, 經濟法學研究所, 「朝鮮における社會主義の基礎建設」, 新日本出版社.
- 朝鮮勞動黨出版社, 「金日成著作選集(I~IV)」, 1968.
- 통일문제연구소, 「북한경제자료집」, 민족통일, 1989.
- 한백사편집실, 「분단자료집(1945~1948자료모음)」, 도서출판 한백사, 1989.
- 海外經濟研究所, 北韓의 農業實態分析, 1978
- 國土統一院, 「北韓에 있어서 土地改革의 集團化過程 研究」, 1972.
- 金喆濟, 「分組都給制導入과 協同農場管理運營의 改善」, 1966.
- 金文植, 北韓集團農場的 特性, 북한, 5, 제2권 제5호, 5월호, 1972. 3. 7
- 盧啓鉉, 北韓 「食糧分組都給制」의 批判, 북한, 12, 제5권, 12月號, 1976.12.1. (pp.151~157)
- 샤뮤엘·모악, 북한의 農業集團化政策 分析, 북한, 8, 통권32호, 1974.(장연호譯) 8.1.(p.276~283)
- 이경숙, “러시아에서의 농업개혁과 농업강령,” 「경제와 사회」, 2-1, 한국산업사회 연구소, 1989.
- 李佑泓, “농업전문가가 본 북한의 농업실태,” 「共產圈研究」, 105-120호, 1987.11~1988.4.
- 蔣尙煥, “土地改革과 農業協同化過程의 特質”, 「북한사회의 구조와 변화」 경남대극동문제연구소, 1987.
- 한석봉,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사회제도」,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4.
- 高潮淨, “北朝鮮經濟의發展と課題” 「親和」, 286, 1977.
- , “社會主義農業の新しい段階,” 「共和國問題」, 1971.

- , 「朝鮮社會主義經濟の研究」, 博文社, 1978.
- ,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における所有問題,” 「アツア經濟」 16-5, 1975. 5.
- 高昇孝, 「朝鮮社會主義經濟論」, 日本評論社, 1973.
- ,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の農業の社會主義化 過程,” 「農業構造問題研究」 139號, 1983. 2.
- , “朝鮮における農業・農民問題解決の特徴,” 「土地制度史學」 33號. 1966.10.
- , 「朝鮮社會主義の理論」, 新泉社, 1978.
- , 朝鮮の農業 “現近社會主義の農業問題” ミネルペア書房, 1981.
- 金廣志, “朝鮮民主主義 人民共和國にすける土地改革と土地所有制度の特質” 仁井田紀念講座編輯委員會, 「現代アツアの革命と法」(下), 勁草書房, 1966.
- , 高昇孝譯, 「朝鮮における社會主義の基礎理論」, 東京, 新日本出版社. 1962.
- 金己大,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の農業,” 「農業構造問題研究」, 136號, 1983. 2.
- 金漢周, 「朝鮮における農業協同化 運動」, 1958.
- 金日成, 「社會主義經濟の理論文題」, 東京 チュチエ思想研究所, 1979.
- , わが國における農業協同化の歴史的經驗」東京, 外國文出版社, 1975.
- , わが國における土地改革の歴史的經驗」平壤, 外國文出版社, 1974.
- , “當面の食糧問題を解決すゝるために” 1946. 2. 27 「食糧自給と國家の自主性」チュチエ思想國際研究所, 1987.
- , “わが國における農業問題解決の經驗について,” 1978. 7. 28.
- , 「社會主義 における農村問題」, 未來社, 1984.
- 金昇俊, “朝鮮における農村問題解決の歴史的經驗”, 「日本朝鮮資料」 1977. 4.
- 古野雅美, “北朝鮮—社會主義の純化と完全自給をめざして,” 「轉換する世界の農業政策」農漁村文化協會, 1988.
- 梶村秀樹, 「北朝鮮における農業協同組合運動(1953~1958) についての—考察」昭和山, 1966.